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6.7.28.][법률 제13817호, 2016.1.27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6.1.27.]

제3조의2(사회적 책임 장려)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, 인권, 노동, 고용, 공정거래,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·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1.27.]

[중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6.1.27.]

부칙 <제13817호, 2016.1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대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촉물자의 구매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중 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"을 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"으로 한다.